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9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 엄태영·김태호·김승수

박덕흠 • 이달희 • 박형수

김장겸 · 정동만 · 이종배

고동진 · 최보윤 · 김예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 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,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

직사회에서부터 일·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제2 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). 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2항제4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"를 "1 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 교 3학년 이하)의"로 한다.

제64조제8호 중 "3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3조(휴직) ① (생 략)	제63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	②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			
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			
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			
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			
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			
직을 명하여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	4. <u>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</u>		
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	학년 이하(대통령령으로 정하		
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	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		
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	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		
되었을 때	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		
	<u> 3학년 이하)의</u>	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64조(휴직기간) 휴직기간은 다	제64조(휴직기간)		
음 각 호와 같다.	,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	8		

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	
<u>3년</u> 이내로 한다.	<u>4년</u>
9. • 10. (생략)	9.・10. (현행과 같음)